교원인사 규정

[전면개정 : 2023년 2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호서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비전임교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 (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년트랙 교원은 평가를 통해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하며,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에는 산학협력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중심교원을 둔다.

③ 비정년트랙 교원은 승진에 있어서 정년트랙 교원과는 다른 조건으로 임용된 교원으로서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수 없는 교원을 말하며, 수행하는 업무의 주된 역할에 따라 교육중심교원, 산학협력중심교원, 봉사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외국인회화교원으로 구분한다.

④ 교원의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심사 및 연봉평가를 위하여 교원의 중심평가유형을 구분한다. 신임교원의 경우 임용 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최초 재임용 평가까지 R형으로 평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E형: 교육영역을 중심평가영역으로 하는 교원
2. R형: 연구영역을 중심평가영역으로 하는 교원
3. S형: 봉사영역을 중심평가영역으로 하는 교원
4. I형: 산학협력영역을 중심평가영역으로 하는 교원

제4조 (교원의 직급) ①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임면권자는 교원의 교육 및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실정에 맞추어 직급별로 교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교원의 소속) ① 교원은 각 학과(학부), 광역 교육 단위(스쿨 등),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학과(학부), 광역 교육 단위 또는 타 부서에 중복 배속할 수 있다. (개정 2024.08.31.)

② 교원의 소속 변경은 본인이 소속변경 승인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조조정에 의한 소속변경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1절 제3관에 따른다.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운영하며 그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원임용심사, 승진심사위원회, 정년보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재임용에 대한 심의

2. 트랙변경 및 중심평가영역 선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3. 교원임용, 승진심사위원회, 정년보장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의결
4. 관련 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5.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원의 임용) ① 교원임용은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으로 구분하며, 신규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시 임용장을 교부하며 기타 사항은 발령 통지로 대체한다.

② 교원은 제3조, 제4조에 따라 그 자격,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승진 및 재임용(재계약), 업적 및 성과약정, 복무 및 처우 등의 계약조건을 따로 정한다.

제8조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 70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정년퇴직은 정년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제9조(의원사직 및 면직) ① 교원은 임용계약기간 중 개인적 사정에 의하더라도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다. 단, 임용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강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정신적, 신체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교원에게 계약기간 중 관계 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원이 계약사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① 본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5년 이내에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조개혁에 의하여 통폐합된 학과(전공)의 소속 교원이 학과(전공) 통폐합 후 5년 이내에 자진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신청자 중 인사위원회 심의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얻은 교원에게 정관 제4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과 본교 규정간 용어의 차이와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트랙 전환) 본교에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는 교원중 업적이 탁월하고, 대학에 기여가 큰 교원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정년트랙 전환 절차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중심평가영역 변경) 본교 임용시 교원별로 정해진 중심평가영역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중심평가영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심평가영역 변경 절차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업적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① 교원의 업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업적평가의 결과를 재임용심사, 승진심사, 정년보장심사 및 업적성과급 산정에 반영한다.

② 상기 ①항에 의거하여 업적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재임용심사, 승진심사, 정년보장심사 및 업적성과급 산정시 평가 기준은 교원별로 정해진 중심평가영역 유형(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봉사영역 중 1영역)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의 별표1, 별표2를 따른다.

제 2 장 신규임용

제14조 (교원의 자격) ① 교원은 본 대학 설립정신과 제반 교육방침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갖춘 자
2.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예체능 및 외국어 회화, 실기 및 실습을 위주로 하는 분야는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우수한 경우 석박사 학위 미소지자도 가능
3. 기독교 신자로서 본 대학교 소재지 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가 가능한 자

② 교원임용의 결격사항은 정관 제6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임용시기 및 방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매 학기 초에 행한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적이 탁월하거나 본교의 특성화 분야 활성화 및 중장기계획에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신임교원 선발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16조 (임용절차)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을 준용하여 단계별 심사를 거치며, 자세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7조 (임용계약) ① 신규채용 교원은 모두 계약제 및 연봉제로 임용한다.

② 임용계약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③ 신규임용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3년 이내)
2.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3년 이내)
3.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3년 이내)

제18조 (직급의 제한) ① 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대학교원 자격기준을 준용하되 경력연수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8.31.)

② 본 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자를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의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 임용하지 못하며, 타 대학에 근무하다가 본 대학교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직전 대학에서의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단, 총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08.31.)

제19조 (신원 및 경력조회) ① 교무처장은 교원의 임용 시 학력과 경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회결과 임용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재임용

제20조 (재임용 심사) ① 교원의 재임용은 매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 심의를 위한 업적의 산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평가 기간이 최소 경과기간보다 짧을 경우 기준 점수를 월할 계산하며, 심사 기산일은 최초 재임용인 경우는 임용일부터, 재임용 통과 이

력이 있는 경우는 직전 재임용 심사 통과 시 영역별 평가기간의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08.31.)

1. 3월 1일자 재임용: 전년도 8월 31일까지의 업적
2. 9월 1일자 재임용: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의 업적

③ 재임용 심의는 교원업적평가결과와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

④ 임면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인사위원회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재임용절차) ① 임면권자는 당해 학기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여야 함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임용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때, 교원업적평가의 정량기준은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연구)에 관한 사항
3. 교내외봉사(봉사)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준수 사항

⑤ 인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최종 심의를 이사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⑦ 임면권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 (이의신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재임용계약) ① 재임용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교 수 : 정년(단, 본인의 요청에 의해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 6년)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3년

② 교원의 재임용(재계약)시 평가기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상에 명기한다.

제 4 장 승 진

제24조 (승진심사) ① 승진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 진다.

② 교원의 승진심사는 해당 학년도 승진 대상자로 하여 년 1회 실시하며, 상반기 승진자는 3월 1일자, 하반기 승진자는 9월 1일자에 발령한다.

제25조 (승진심사 신청자격) ① 교원은 승진을 위한 적정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직위별 최소 근속년수에 도달하면 승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전환된 교원은 비정년트랙의 근속기간을 50%를 인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1. 조교수 → 부교수 : 6년
2. 부교수 → 교 수 : 6년

② 교원 중 업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승진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 승진할 수 있다.

1.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연구영역에 한하여 교수승진 최소경과기간에 해당되는 최소업적기준의 2배 이상
2. 현 직급 재직기간 중의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평가 영역 중 연구(또는 산학협력)영역, 교육영역 및 봉사영역의 각 영역별 업적이 동일직급 교원전체의 상위 30% 이내일 경우로 한한다.

제26조 (승진심사 절차) ① 승진심사 자격을 갖춘 교원은 승진심사 신청서를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신청한 교원에 대해 교육·연구·봉사·산학실적 등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신앙, 천안·아산 인근지역 거주여부, 근무 연한, 근무의 충실도, 학생지도 능력, 제반 교육방침 이행, 연구 및 산학협력 역량, 학교발전 공헌도 등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이사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임면권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의 승진 여부를 결정한다.

제27조 (승급) 교원의 정기승급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단, 계약제로 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계약일을 기준으로 행한다.

제 5 장 정년보장

제28조 (정년보장심사) ① 정년보장은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교원의 정년보장심사는 해당 학년도 정년보장심사 대상자로 하여 년 1회 실시하며, 상반기 정년보장임용 교원은 3월 1일자, 하반기 정년보장임용 교원는 9월 1일자에 발령한다.

제29조 (정년보장심사 신청자격) 정년보장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계약이 만료된 교수(신규 임용시 교수로 임용된 교원에 한함)
2. 교수 승진시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교원
3. 해당학년도 교수 승진 대상자(단, 교수 승진심사 통과자에 한해 심사)

제30조 (정년보장심사 절차) ① 정년보장심사 자격을 갖춘 교원은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신청서를 정

년보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정년보장심사를 신청한 교원에 대해 교육·연구·봉사·산학실적 등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신앙, 천안·아산 인근지역 거주여부, 근무 연한, 근무의 충실도, 학생지도 능력, 제반 교육방침 이행, 연구 및 산학협력 역량, 학교발전 공헌도 등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정년보장에 대한 심의를 이사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임면권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의 정년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31조 (정년보장 교원의 업적평가) ① 정년보장교원에게는 정년보장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단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3년단위평가를 미통과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호봉제 교원은 호봉승급을 중지하며, 연봉제 교원은 연봉평가의 세부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또한, 연구년 및 교비연구과제 선정과 성과급 지급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후 1년 단위로 재평가하여 평가의 기준점수를 초과한 때부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1. 호봉제 교원은 호봉 승급을 재 개시하며, 이때 호봉 승급이 중지된 기간은 승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봉제 교원은 연봉평가 세부 등급을 원래의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3. 3년단위평가 재평가 통과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단위 평가를 실시한다.

③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교원은 심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3년단위 평가 시기) ① 교수의 3년단위 평가는 매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수의 3년단위 평가를 위한 업적의 산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평가 기간이 최소경과기간보다 짧을 경우 기준 점수를 월할 계산하며, 평가 기산일은 최초 평가인 경우는 정년보장 심사 통과 시 영역별 평가기간의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3년단위 평가 통과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직전 3년단위 평가 통과 시 영역별 평가기간의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4.08.31.)

1. 3월 1일자 3년단위 평가: 전년도 8월 31일까지의 업적
2. 9월 1일자 3년단위 평가: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의 업적

제 6 장 보직

제33조 (보직) 보직이라 함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라 총장이 교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책에 보함을 말한다.

1.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과 정관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처·실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제1호 이외의 직책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34조 (보직의 임기) 각 보직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7 장 징계

제35조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 위원장 선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8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제척 및 기피)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0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징계의 양정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며 징계의 양정 등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0호)을 준용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의 시효는 정관 60조의 2에 따른다.

제44조 (소청심사의 청구)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 제18966호)에 따른다.

제 8 장 국내교류

제45조 (국내교류) 교원은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지원계획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제46조 (대상 및 자격) ① 파견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서 지원기관 선정 기준에 부합한 자로 한다.

② 초빙자격은 국내대학의 전임교원 및 지원기관이 지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한다.

제47조 (선발절차) ① 교류희망 신청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본 대학교 장기근무년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한다.

③ 파견교수는 1년에 1명으로 하되, 학과 및 학부별로 균형있게 선정한다.

④ 휴직, 장기출장, 연구년 등으로 해당 전공교원의 결원수가 3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그 전공의 교원은 파견신청을 할 수 없다.

제48조 (구비서류) 지원기관의 소정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절차를 본인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되, 지원기관 신청마감일 15일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49조 (처우) ① 초빙교원에 대하여는 1학기당 1강좌 이상의 강의를 배정하고 연구에 필요한 대학 내 시설 및 자료의 활용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파견교원에 대하여는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급여의 전액(상여금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며 본 대학교의 강의는 배정하지 않는다.

제50조 (신청의 제한) ① 본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연구기간과 연속하여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을 신청할 수 없다.

② 파견교원은 교류의 종료일로부터 교류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구년 신청 자격을 유보한다.

제51조 (기타 사항) 교류교원에 관한 일반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9 장 보칙

제52조 (보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 (신분보장)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54조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의 제한) ①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은 승진 또는 정년보장을 받을 수 없다.

1.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 또는 정년보장제한을 받고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처분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재 기산한다.

③ 교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업반응도 조사결과가 규정된 기준 미만인 경우
2. 본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책임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거나 전공이 폐지된 때
5. 사립학교법, 정관,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6.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권을 침해하였을 때
7.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학생지도 소홀로 학생 소요사태가 유발되어 수업결손을 초래하였을 때
8.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9.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④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되 임용기간이 정하여진 교원이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재임용 기한이 도래한 경우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교수재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임용할 수 없다.

⑤ 근무기간 만료일 현재 휴직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아니 하거나, 장기 해외여행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

제55조(임용기간의 계산) ① 임용기간 중에 승진 또는 전직된 경우 그 때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한다.

②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 중인 자의 파견 또는 출장기간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는 그 파견 또는 출장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단,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정관 제38조 휴직기간은 승진을 위한 최소경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7호 및 7의 2에 따른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⑤ 정관 제38조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 (포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 (겸직금지) ① 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 기관의 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임(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 (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9조 (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의 감경 공적 및 정상참작 기준

구분	내 용	비 고
1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기관표창의 경우 단위 기관장과 학교장 포함
3	• 대학의 모범교직원 표창 및 장기근속 표창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4	• 기타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된 자 - 우수연구자, 우수교육자, 학생모집 및 진로지도 우수자 등	징계위원회에서 공이 인정된 자